

#### 4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

- 도심지 또는 주택가에 자연 번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
-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전 예방

#### □ 추진방침

-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소음, 악취 등 지역 민원 해소
-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(농식품부 고시)을 준수하여 사업추진

#### □ 추진계획

- 주 관 : 공주시장
- 사업기간 : 2026. 1 ~ 12월
- 사업대상 :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행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 동물병원
- 사업량 : 640마리
  - 지원단가 : 250천원/ 마리
- 사업내용 : 길고양이 포획, 중성화 수술 및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사업계획

(단위 : 마리, 천원)

세 부 사 업	사업량	단가	사 업 비			
			계 (100%)	국 비 (16)	도 비 (25)	시군비 (59)
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	640	250	160,000	25,600	40,320	94,080

#### □ 사업시행요령

- 사업대상 : 동물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른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위탁 계약한 동물병원

#### ○ 세부추진 요령

- 신고(민원인) → 시·군 접수 → 시·군 총괄 취합 → 직영 및 위탁업체에 민원접수 사항을 전달 → 직영 및 위탁업체는 포획인을 동원,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에 출동
- 포획인이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하여 사진촬영, 포획 후 연계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(사진 기록 등은 APMS 에 입력 관리)
- TNR 제외 대상 : 몸무게가 2kg 미만,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, 수태 또는 포유 중이 확인된 경우, 단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라 조치

#### <TNR 제외 대상>

1.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방사
  2.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
- \* 기존 위반시 보조사업수행자(동물병원 등)에게 보조금 지급 금지(환수) 및 위반행위 반복시 지정 취소 등 조치

- 장마철·혹서기 및 동절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포획 자제, 단 지역 내 캣맘 등의 사후관리가 가능할 경우 포획 등 실시
-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실적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PMS)에 반드시 등록 (APMS 등록 실적으로 농식품부 사업량 배정)

※ 세부 추진사항은 '2025년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지원 사업 시행지침'에 따름